

변리사스쿨 6월 월말모의고사 정오표

| 과목 | 번호 | 구분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
| 산업재산권법 | 33 | 정답 | ③ | 전원 정답 |
| | 35 | 정답 문제 | ② | 전원 정답 |
| | 40 | 정답 해설 | ④ | ③ |

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

[33번] Q.

해설지 내용에 따르면 정답이 5번이어야 하는데 3번이 정답으로 되어있습니다.

답변) 전원 정답.

[35번] Q.2번 선지

선지 내용 :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(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) 입체적 형상, 색채, 색채의 조합,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

문제의 답은 2번인데, 2번 선지는 문장이 완전히 쓰여 있지 않고 '등록을 받을 수 없다(혹은 있다)'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선지에서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지 불명확합니다. 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답변) 보기② 오류. 전원 정답.

[40번] Q.

해설지 내용에 따라 정답이 4번이어야 하는데 3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

40번 문항의 정답은 4번으로 쓰여 있고 이에 따른 해설은 문제가 없으나, 시험지에서 해설에 따라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는 3번입니다. 채점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

또한 해설지의 다른 선지도 실제 시험지와 대응되지 않아 명확한 해설이 제공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

답변) 정답 ③, 해설 수정하였습니다.

① 상표법 제119조 제2항.

② 상표법 제119조 제3항.

③ 상표법 제119조 제4항은 “제1항(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6호의 취소사유는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④ 상표법 제119조 제5항.

⑤ 상표법 제119조 제6항.